[붙 임]

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[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]

- **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해당 신청일에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한국부동산원 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해야하며**, 미접수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함
 *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견본주택 접수가 가능하며, 해당 신청일 10:00~14:00 까지만 접수 가능.
- **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(예비추천자 포함)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으며,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 접수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약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**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및 제4조 제3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[2025.10.31.(예정)] 현재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함
-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, 청약신청 및 동·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, 당첨일부터 '수도권 및 투기·청약과열지역 1년, 수도권외 6개월, 위축지역 3개월'(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) 동안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)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
-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므로, 해당 기관에서 특히 '신청자격' 및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를 충분히 안내, 검증 받으시기 바람
-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「주택법」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,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단,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)이 부과될 수 있음
- 위장전입, 허위문서 제출 등을 통한 부정당첨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,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음
- 본 아파트는 「주택법」 제64조 및 「주택법시행령」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(당첨자발표일)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됨. (단,「주택법」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-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[2025.10.31.(예정)]에 래미안 홈페이지(https://www.raemian.co.kr)에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

1. 공급개요 및 주요일정(예정)

공급위치		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 일대
공급규모		아파트 지하 3층, 지상 35층, 17개동, 총 2,091세대 [조합 1,557세대(보류지 28세대 포함)] 중 아파트 일반공급 506세대
주요 일정 (예정)	입주자 모집공고	2025년 10월 31일(금) 예정
	견본주택 개관	2025년 11월 7일(금)~9일(일) 예약제 운영 예정 (https://www.raemian.co.kr)
	특별공급 청약접수	2025년 11월 10일(월) 예정
	당첨자 발표	2025년 11월 19일(수) 예정
	계약체결	2025년 12월 1일(월) ~ 12월 4일(목) 예정

※ 상기 주요일정은 사업추진 인·허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, **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및 대표번호로 문의**하여 주시기 바람

2.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[중소기업근로자]

주택형 (청약신청 기준)	약식 표기	일반분양 세대수	공급면적(㎡)			특별공급 배정세대수		비고
			주거전용	주거공용	소계	대상자	(예비추천자)	
059.9400A	59A	223	59.9400	18.3224	78.2624	3	(15)	
059.9800B	59B	129	59.9800	19.4906	79.4706	2	(10)	
059.8500C	59C	26	59.8500	18.4639	78.3139	1	(5)	
059.9100D	59D	78	59.9100	18.5762	78.4862	1	(5)	
084.9100A	84A	14	84.9100	25.9374	110.8474	-	-	
084.9600B	84B	29	84.9600	25.6076	110.5676	1	(5)	
084.9600C	84C	7	84.9600	26.2076	111.1676	-	-	
소계						8	(40)	

※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

※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의 '주택형'으로 청약하여야 하며, 동호수 배정은 각 '주택형' 별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입주자 선정 시 무작위로 결정되므로,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

※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26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(예비추천자)를 선정하며,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은 **500%**임

※예비입주자(예비추천자)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음

3.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■ 신청자격

• **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36 조 제 8 호 중 제 35 조 제 1 항 제 23 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**에 해당하시는 분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[2025.10.31.(예정)] 현재 **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**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신 분

• 특별공급 대상자 청약통장 가입요건

-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
-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,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
-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 ㎡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신 분
- 청약예치 기준금액

구 분	특별시 및 부산광역시	그 밖의 광역시	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
전용면적 85 ㎡이하	300 만원	250 만원	200 만원

※ '지역'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

※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2의3호, 제2조 제4호에 의거 '세대' 및 '무주택 세대구성원'의 정의가 변경되었음

- **"세대"란, 다음 각 목의 사람(이하 "세대원")으로 구성된 집단**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)**을 말한다.**
 - 가. **주택공급신청자**
 - 나. **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**
 - 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**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**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. (예) 부·모, 장인·장모, 시부·시모, 외조부·외조모 등
 - 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**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**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. (예) 아들·딸, 사위·며느리, 손자·손녀, 외손자·외손녀 등
 - 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**배우자의 직계비속** :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. (예) 전혼자녀 등
- **"무주택세대구성원"이란,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.**

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- 입주자모집공고일[2025.10.31.(예정)]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
-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
-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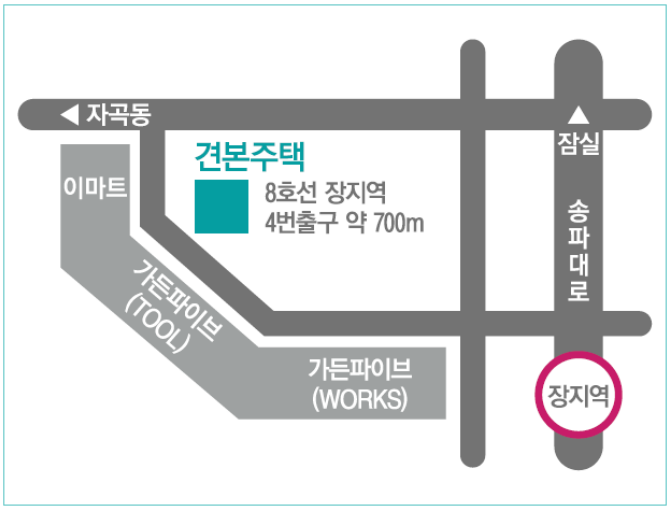
■ 당첨자 선정방법

-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우선하여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.
-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(예비추천자 포함)로 선정된 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일[2025.11.10.(예정)]에 반드시 청약접수 하여야 하며,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함
- **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, 동·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·호수를 결정함**
-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예비추천자 및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

4. 기타 유의사항

-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, 관계법령에 따라 중도금 대출 LTV 에 제한이 있으며, 개인의 주택소유(분양권 등 포함), 대출유무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,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. 사업주체는 고객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
-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1 인 1 건만 신청가능하며, 1 인 2 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함. 단, 본인이 동일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(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)
-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의 특별공급은 1 세대 내 1 건만 신청가능하며,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부적격으로 간주하며 부부의 경우 청약접수가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봄
- 공급금액, 재당첨제한, 전매제한, 공급대상 주택형 등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,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
- 신청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견본주택, 인쇄제작물 및 래미안 홈페이지(https://www.raemian.co.kr)에서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
- 기타 청약관련 문의사항은 **'반포 래미안 트리니원' 대표번호(02-401-3301)**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

5. 견본주택 안내



•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7 래미안갤러리,
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견본주택

•대중교통(지하철) 이용시: 장지역(8 호선) 4 번출구
약 700m

•대표번호: 02)401-3301(주말 및 공휴일 휴무)

6. 위치도 및 조감도

위치도	조감도
	

※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